

원고료 및 제수당 지급규칙

제	정	2005. 05. 30.
개	정	2008. 09. 29.
개	정	2011. 07. 05.
개	정	2012. 06. 08.
개	정	2015. 04. 30.
개	정	2015. 12. 30.
개	정	2019. 01. 23.
개	정	2020. 03. 31.
개	정	2020. 12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보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원고료 및 제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9.29., 2015.12.30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연구원의 임·직원 및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(연구과제 포함)와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, 자문회의, 심사·평가·강연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등에 적용한다. <개정 2008.9.29.>

제3조(지급대상) ①원고료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및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고에 한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8.9.29.>

②제수당은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, 자문회의, 심사, 평가, 강연에 참여한 원외인사에 대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08.9.29.>

제4조(지급액) ①원고료 지급기준액은 <별표 1>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별기고로 인정한 경우 편당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제수당 지급기준은 <별표 2>와 같다. 다만, 원장이 저명도, 회의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 할 수 있다. <신설 2008.9.29., 2019.01.>

23., 2020.03.31.)

제5조(매수산정) 원고 중 목차 및 행수가 1/5미만인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별지로 첨부된 표 및 도표는 1/2매로 계산하되, 인용의 경우는 매수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08.9.29.>

제6조(지급일) 원고료 지급일은 연구원이 청탁한 원고의 납품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하며, 각종 연속간행물 게재를 위한 원고는 간행물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9.29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7.5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6.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4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.2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3.3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2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〈개정 2008.9.29., 2015.4.30.〉

원 고 료 지 급 기 준

가. 원고료

(단위 : 원)

구분	내 용	단 위	지 급 액(매당)	
			원내직원	외부인사
국 어	○ 연구논문	A4용지 1매	40,000 이내	50,000 이내
	○ 평론, 수필, 제언, 콩트	A4용지 1매	30,000 이내	40,000 이내
	○ 시	편 당	60,000 이내	100,000 이내
	○ 부록 및 자료	A4용지 1매	8,000 이내	16,000 이내
	○ 연구과제 발췌	편 당	60,000 이내	60,000 이내
	○ 권두언	A4용지 1매	40,000 이내	60,000 이내
외 국 어	○ 연구논문	A4용지 1매	60,000 이내	70,000 이내
	○ 전문분야에 관한 평론, 수필		20,000 이내	30,000 이내
	○ 부록 및 자료		15,000 이내	20,000 이내

※ A4용지(71Columns×25Lines,11point), A4 1매는 200자 원고지 4매에 해당함

나. 번역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외국어별	단 위	지 급 액 (매당)	
			원내직원	외부인사
외국어 → 국 어	영 어	A4용지 1매 ※ A4용지(71Columns×25Lines,11point) (1매는200자 원고지 4매에 해당)	10,000	20,000
	일 어		10,000	20,000
	불 어		10,000	20,000
	독 어			
	중국어			
	특수어			
국 어 → 외국어	영 어	15,000	30,000	
	일 어	15,000	30,000	
	불 어	20,000	35,000	
	독 어			
	중국어			
	특수어			30,000

※ 특수어란 위에 열거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지칭한다.

※ 위 금액에서 내용의 난이도(고서류, 전공논문, 일반잡지, 자료 등)에 따라 30%~50%의 교열료 및 15% ~ 30%의 Native Speaker의 추가 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〈특별기고 원고료 지급대상〉

구 분	대 상 자	지급액(원/편)
전북발전포럼 시론, 권두언 등	대학교 총장, 장관 및 차관급 공무원 시·도지사, 시·도의회 의장 부지사·부시장, 시장·군수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장 주요 기관·단체장 국제적·전국적 명성의 석학 및 원로 원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	200,000 ~ 300,000
	기타 집필자	150,000 ~ 200,000

※ 위의 경우 동등한 직급의 현직 및 전직을 포함

<별표 2> <신설 2008.9.29.> <개정 2011.7.5., 2012.6.8., 2019.01.23., 2020.03.31., 2020.12.28.>

제 수당지급 기준표

(단위 : 원)

구 분	대 상 자	비 고
세미나, 워크숍, 연찬회, 공청회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조연설 : 300,000~1,000,000 • 사 회 자 : 300,000~1,000,000 • 발 표 자 : 300,000~700,000 • 토 론 자 : 150,000~400,000 	저명도, 연구경력, 연구실적, 회의시간, 회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용
연구과제 외부평가위원 수당 (연구심의회 수당 등)	120,000 ~ 300,000 (1편당 기준)	
연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	100,000~200,000	
기타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(편찬, 편집 등)	100,000~200,000	
초청강연회 특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인사 : 300,000~1,000,000 • 해외인사 : 300,000~1,500,000 	
이사회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석수당 : 200,000 • 서면심의수당 : 100,000 	
인사심의위원회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석수당 : 150,000~200,000 • 서면심의수당 : 100,000 	
직원채용심사 참석 수당	<서류필기 심사위원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대상 10명 이하 : 150,000 • 심사대상 10명 초과 : 200,000 <발표 및 면접 심사위원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대상 5명 이하 : 200,000 • 심사대상 6~10명 : 300,000 • 심사대상 10명 초과 : 350,000 <피면접자> : 50,000	
각종 연구업무회의 초청 원의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	100,000~200,000	

<p>연구과제 자문 수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문회의 참석 : 120,000~300,000 • 집필자문(회의 불참 시) : 자문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실행예산 (자문회의 수당)범위 내 지급 	
<p>국책사업 및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(정책고문단 자문수당 등)</p>	<p>자문비 : 200,000~1,000,000 ※자문내용 및 특성에 따라 범위 내 지급</p>	
<p>전라북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가자문 수당 (도정 정책자문료 등)</p>	<p>정책자문비 : 1,000,000원 이하 (전라북도 재정현안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. 단, 특별한 경우 원장 결정 후 지급)</p>	

※ 전라북도지역 외 타 지역 거주자는 교통비 등 실비 추가지급 가능가능

